

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일자리정책과

제정 2025· 7· 8 조례 제224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2. “골목상권”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.
 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
 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
 - 다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
 - 라. 법 제2조제2호 상점가
 - 마. 법 제2조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
 - 바. 법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
3. “골목상권 공동체”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
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1.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
2.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)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동시설,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
2. 공동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
3. 골목상권 공동체 및 축제, 행사 등 홍보
4.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
5. 다른 지역의 상인회·조합 등과 협력 사업
6.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,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영업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2.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

제7조(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에서 제외한다.

1. 「은행법」, 「보험업법」,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금융·보험업 및 부동산업
2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
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숙박업·유흥 및 단란주점
4. 귀금속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게임장업
5. 그밖에 사치·향락 및 사행성업 등 시장이 정하는 업종

제8조(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)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

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,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평가)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, 그 결과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
2.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
3.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

제11조(지원 및 환수조치 등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,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